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-406호

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
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2020. 9. 17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-406호

「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17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1. 개정이유

「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」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제도와외의 동등성 확보 및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가공품 등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출국 정부는 매년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계획과 실적을 한국정부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7조)
- 나.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을 수입허용국가 및 축산물에 포함함(안 별표 제1호가목)

3. 의견제출

「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」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우편번호 : 28159, 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, 참조 : 현지실사과, 전화: 043-719-6220, 팩스: 043-719-620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

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(지역)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식육 및 식용란”을 “축산물”로 한다.

별표 제1호가목의 독일란 다음에 리투아니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리투아니아	가금육	
-------	-----	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수출축산물(선적일 기준)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잔류물질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은 수출국은 2022년 1월 1일까지 적용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) <u>식육 및 식용란</u>을 수출하는 수출국은 수출축산물의 원료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해 잔류물질(검사기관, 연간 검사계획, 검사방법, 검사결과 등) 통제를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년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) <u>축산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